



# 폭행/폭력의 피해자 안내

알래스카 주법 18.65.520

과

보호 명령

제공 업소  
시 보건 복지부 복지과  
안전 연결 프로그램

그리고

앵커리지 경찰국  
한국어 판



2009년 9 월

(907) 343-6589

이 책자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은  
위의 전화로 연락 하십시오

**KOREAN**

이 책자는 법률상 처벌이 되는 가정 폭행/폭력에 관해 도움이 되고자 한국어와 영어로 기입하여 제일 언어가 영어가 아니지만 친지나 가족이 양 언어를 읽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차례  
(TABLE OF CONTENTS)

가정 폭행/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 .....	1
강력범죄에 대한 보상위원회 (VCCB).....	4
보호 명령.....	4
보호 명령계속.....	5
보호 명령에 관한 의문 .....	5
연방정부 가정 폭행/폭력 보호명령법 .....	6
이민 문제와 가정 폭행/폭력.....	8
<b>ENGLISH VERSION.....</b>	<b>9</b>
<b>INFORMATION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	<b>12</b>
<b>VIOLENT CRIMES COMPENSATION BOARD ....</b>	<b>15</b>
<b>PROTECTIVE ORDERS.....</b>	<b>15</b>
<b>PROTECTIVE ORDER QUESTIONS .....</b>	<b>16</b>
<b>FEDERAL DOMESTIC VIOLENCE PROTECTIVE ORDER LAWS.....</b>	<b>16</b>
<b>IMMIGRANT ISSUES &amp; DOMESTIC VIOLENCE .....</b>	<b>18</b>

### 가정 폭행/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

가정 폭행/폭력의 피해자로서 만일에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알래스카주법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도움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주법 AS 18.65.520 법규에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피해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폭행/폭력 피해자의 권한을 알리는 안내는 구두로 사아모어, 몽어, 타갈록어, 한국어 또는 스페인어 등으로 제공 되고 있습니다. ADVPP II Language Line 전화 343-7185로 하십시오.

**알래스카 주 법규 18.65.520.** 가정 폭행/폭력에 대한 피해자에게 보내는 통지서. 가정 폭행/폭력이 포함된 사건 조사를 하는 경찰은 구두와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행/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권한과 피해자에게 여러가지 도움이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일에 본인이 가정 폭행/폭력의 피해자이며 신체적 안전을 위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어지면, 경찰로부터 긴급 보호영장을 포함하여 안전을 위해 보호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로 하여금 본인의 필수품을 가지고 올 때나 가족이나 친지의 집을 포함하여 정해진 안전한 장소 또는 보호소, 또는 그것과 같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는데 경찰의 동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 어떤 곳은 가정 폭행/폭력의 피해자에게 피신처 또는 도움을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은 100 West 13<sup>th</sup> Avenue에 위치하고 있는 A.W.A.I.C. 전화는 **279-9581** 입니다. 그곳의 기금 전화는 **272-0100** 인니다

만일 치료가 필요하시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지방 검사가 사건을 가정폭행/폭력으로 법정소송으로 제시 할 것 인지의 여부도 경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무부는 피해자/증인 보조기관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에 관해서는 **350 K Street Suite 520** 에 위치한, 전화번호 269-6300 지방 검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함한 규정에서 법정에 보호 명령의 탄원서를 요청 할 권한이 있습니다.

(1) 가해자의 폭행위협과 더 이상 폭행을 하는것을 금한다; (2) 가해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도로 연락하려 하거나, 미행 하거나, 괴롭히거나, 전화를 하는 등을 금한다; (3)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떠나 있게한다; (4)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직장; 또는 가족과 자주 다니는 지정된 장소에 접근을 금한다; (5) 가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혹은 그가 타고 있는 차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을 금한다; (6) 만일에 가해자가 폭행 당시 실제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무기를 사용한 것을 법정에서 알게 되면, 그 가해자는 무기사용이나 그것을 소유하는것을 금한다; (7) 만일에 가해자가 폭행 당시 무기를 소유 또는 사용했음을 법원에서 알게 되면 그 무기를 반납 하도록 한다; (8) 경찰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동행하여 그 집, 자동차, 혹은 다른 물건들을 안전 하게 소유 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또는 그 집에서 피해자의 소유물건을 옮기는 경우에도 안전 보장을 한다; (9) 탄원하는 사람에게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수여할 것이며 만일에 탄원하는 사람과 미성년자의 안전이 보장 된다면 가해자의 방문을 타협 할 수 있다;

(10) 자동차 소유와 사용 그리고 개인의 필수품등의 소유를 허용하며; (11) 가해자는 통제하는 섭취물 (예:약물이나 음주)를 금할 것이며; (12) 만일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돌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이 사건과 관계 없이 독립적인 법정 책임이 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3) 가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병원비용, 또는 법정 보호명령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14) 가해자가 구타중제 연수에 참가 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그리고 (15) 법정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른 필요한 지원도 정할 것이다. 보호명령을 얻기위해 필요로하는 모든 신청서는 근처법정에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신청하는데는 변호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변호인에게 의뢰 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보호명령 신청서를 내는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앵커리지 근교에 위치한 가정폭력/폭력부서 주소 **100 W. 13<sup>th</sup> Ave., Anchorage, AK. 99501** 으로 연락 하십시오. A.W.A.I.C. 사무실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가정폭행, 타박상 치료, 안전한 장소와 보호소, 사회복지업소등 다른 도움들을 알선 할수 있습니다.

**A.W.A.I.C. 전화 279-9581**

**24시간 위급관리본부. 272-0100**

가정범죄보상부(VCCB)에서도 보상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VCCB는 전화1-800-764-3040**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가정폭행의 피해자가 영어를 이해 못할 경우, 경찰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노력하여 이 부문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도움과 권한을 피해자가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 강력범죄에 대한 보상위원회 (VCCB)

재정적 도움

**1-800-764-3040**

주소 PO Box 111200 Juneau, AK/99811. 폭행/폭력 구타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예상 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주정부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VCCB는 해당되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담비용, 상실된 급여나 다른 손실을 지급 해 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로: 구타 또는 범죄를 5일내에 경찰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혹은 가능한한 빨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이 일어난 날 부터 2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CCB 는 주법아래 해당여부를 기본으로 해서 지불/비용의 지불가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VCCB 신청서는 앵커리지 경찰소, 주경찰소, 지방검사실, 근처 병원, STAR, 그리고 피해자의 정의 사무실 등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www.state.ak.us/admin/vccb](http://www.state.ak.us/admin/vccb) 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보호 명령

보호 명령은 미행, 성폭행, 그리고 가정 폭행/폭력 사건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위협 또는 죄를 범하는 것을 금합니다. 보호 명령을 요청 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 해야 합니다. 판사나 행정인은 제출된 내용을 기본으로 보호 명령의 발부를 결정 합니다.

만일에 영어를 이해 못 하시면, 보호 명령은 스페인어, 사모오아어, 타갈록어, 한국어, 그리고 몽어로 되어 있으니, **ADVPP II Language Line** 전화 **343-7185**로 전화하십시오.

### 보호 명령계속

보호 명령의 탄원을 제출 하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거주지와 전화번호를 비밀보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알라스카 법원 웹 <http://state.ak.us/courts> 에 또는 Boney 법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 주소는 303 K Street 입니다. 가정 폭행/폭력 사무실 업무시간은 월요일 오전 8시부터 토요일 저녁 9시까지입니다. 주말은 12시 부터 저녁 9시까지 입니다. 전화 번호는 264-1616입니다. 업무시간 외는 경찰 파견과 전화 번호 786-8900로 전화를 하셔서 경찰이 긴급 72시간 보호명령을 제기 할 것을 요청 하십시오.

### 보호 명령에 관한 의문

현재 보호 명령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알라스카 법원 **264-0616**로 전화 하십시오. 만일에 정규 업무시간 후에는 전화를 하실 때에는 (아래) 번호에 음성녹음을 남기십시오.

알라스카 주 법원, 가정 폭행/폭력과의 주소는 **303 K St., Anchorage, 99501** (월-금 오전8시 - 저녁9시, 토-일 12시-저녁 9시) 기타 긴급시, 72시간 명령에는 경찰소 전화 **786-8900**로.

## 연방정부 가정 폭행/폭력 보호명령법

최근에 알라스카로 오셨습니까? 연방법은 거주하는 주나 여행으로 가 있는 주에서도 유효한 보호 명령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원은 타주에서 발부한 보호 명령을 현지에서 발부한 것처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Full Faith and Credit Orders of Protection (보호 명령의 완전 신뢰와 확실성) 법입니다. (18 U.S.C. & SECT; 2265) 그 법은 장기 (6개월 내지는 1년), 단기 (72 시간) 그리고 일방적 (20일) 별로 적용이 됩니다. 그 명령은 합법적으로 폭행/폭력자와 미행자에게 집행/전달 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쌍방 보호 명령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폭행/폭력과 미행자는 피해자에게 역 탄원서 제출은 하지 않았어야 하며, 만일 역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면 법원은 양쪽 모두에게 보호명령을 가질 자격이 없음을 판정 내려야만 합니다. 유효한 보호 명령이 적용된 남자나 여자가 보호법을 위반 할 의도로 타 주나 인디언 소유지역에 출입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은 타주간을 출입 할 때 보호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을 할 의도에서 위법을 하였으며, 또 실제로 위법을 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위법 행위가 일어났음을 요구합니다. (Interstate Travel to Violate an Order of Protection, 18 U.S.A. & sect: 2262(a)(1).

알래스카 주가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증된 보호 명령서 사본2부를 303 K Street에 위치한 알래스카 가정 폭행/폭력 사무소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정폭력 타주인 신청” (domestic violence foreign filing) 혹은 “미행 타주인 신청” (stalking foreign filing)이라고 부르며, 알래스카 주에서 만일에 폭행자 또는 미행자가 현지에서 위법을 할 시에는 알래스카 주에게 사법행사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정 폭행/폭력 사무소에서 알래스카판 보호명령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실무자는 알래스카 경찰에 제출된 사본을 알래스카 경찰에게 보냅니다. 그 보고를 경찰이 그들의 사건계시판에 게시할 것 입니다. 경찰이나 법원은 보호명령의 사본이나 알래스카 법원에 명령 탄원서를 제출 한 통보를 상대의 폭행자/미행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명령의 사본은 언제나 지니고 다니십시오.

추가 안내는:

알래스카 법원 가족 폭행/폭력부 전화	<b>264-0616</b>
가정법원 자가 주행과	<b>264-0851</b>
주내 무료 장거리 전화	<b>1-800-279-0851</b>
앵커리지 경찰소	<b>786-8900</b>

## 이민 문제와 가정 폭행/폭력

가정 폭행/폭력으로 인해 경찰의 보호, 의료, 사회복지부의 도움을 요청하면, 국가안전보장부에게 신고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민신분은 당신의 안전과 보호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폭행/폭력 상황을 떠나면서 거주방법을 모색하시기를 원하시면 Violence Against Women Law (부녀자에 대한 폭행/폭력 법령)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하신 분들은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는 2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1) 본인 요청: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이민국(INS)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 당신의 남편에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2) 추방 면제: 법원은 추방을 면제하고 거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주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추방령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신청 절차 전에 이민변호사에게 의뢰 하십시오.

이민국(INS)에 가시기 전에 보호실 사무원, 이민 담당 변호사, 또는 폭행/폭력부 직원에게 의뢰하십시오. 가정 폭행/폭력 방지 기금 웹 2008.

지역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과 이민 원조부

카톨릭 복지사회 원소부

**276-5590**

알래스카 이민 사법기관(AIJP)

**270-2457**

주소: 431 W. 7<sup>TH</sup>. Ste. 208. AIJP 는 비영리 단체로 이민 하시는 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법적 이민 신청, 신청, 영주권 신청, 노동 허가, 가족 탄원서 그리고 폭행/폭력의 피해자 탄원서 등도 포함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가정 폭행/폭력과 이민의 안내는 다음으로 연락 하십시오.

###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가정 폭행/폭력 방지 기금)

웹: <http://www.endabuse.org/program>.

**ENGLISH  
VERSION**

**INFORMATION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LASKA STATUTE  
18.65.520**

**AND**

**PROTECTIVE ORDERS**

**BROUGHT TO YOU BY THE  
MUNICIPAL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UMAN SERVICES DIVISION  
SAFETY LINKS PROGRAM  
AND THE  
ANCHORAGE POLICE DEPARTMENT**

**SEPTEMBER 2009  
CALL SAFETY LINKS AT  
(907) 343-6589  
FOR QUESTIONS OR COMMENTS RELATED  
TO THIS BOOKLET.**

**THIS BOOKLET INCLUDES  
STATUTORY DOMESTIC VIOLENCE  
INFORMATION IN KOREAN AND  
ENGLISH TO ASSIST USERS  
WHOSE FIRST LANGUAGE IS NOT  
ENGLISH, BUT WHO HAVE  
FRIENDS OR FAMILY WHO READ**

## **INFORMATION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s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if you do not understand English, Alaska law requires the police officer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inform you of the services and rights specified in AS 18.65.520 in a language you understand.**

Domestic violence victim rights information is available orally in Samoan, Hmong, Tagalog, Korean, and Spanish by calling the **ADVPP II Language Line** at the following numbers:

<b>SPANISH</b>	<b>343-7181</b>
<b>SAMOAN</b>	<b>343-7182</b>
<b>HMONG</b>	<b>343-7183</b>
<b>TAGALOG</b>	<b>343-7184</b>
<b>KOREAN</b>	<b>343-7185</b>

**ALASKA STATUTE 18.65.520** Notification to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 peace officer investigating a crime involving domestic violence shall orally and in writing inform the victim of the rights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services available to them. The notification is as follows:

**If you are th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and you believe that law enforcement protection is needed for your physical safety, you have the right to request that the officer assist in providing for your safety, including asking for an emergency protective order. You may also request the officer to assist you in obtaining your essential personal belongings and locating and taking you to a safe place, including a designated meeting place or shelter, the residence of a household member or friend, or a similar place of safety.**

**If you are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you may request the officer assist you in obtaining medical treatment you may obtain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 prosecuting attorney will file a criminal complaint about the domestic violence. Additionally, the victim/witness assistance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Law may be able to help you. This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which is located at 310 K Street Suite 520 phone 269-6300.**

**You also have the right to file a petition in court requesting a protective order that may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provisions: (1) prohibit your abuser from threatening to commit or committing further acts of domestic violence; (2) prohibit your abuser from stalking, harassing, telephoning, contacting, or otherwise communicating with you, directly or indirectly; (3) remove your abuser from your residence; (4) order your abuser to stay away from your residence, school, place of employment; or any other specified place frequented by you or another designated household member; (5) prohibit your abuser from entering your vehicle or a vehicle you occupy; (6) prohibit your abuser from using or possessing a deadly weapon if the court finds your abuser was in the actual possession of or used a weapon during the commission of your abuse; (7) direct your abuser to surrender any firearm owned or possessed by that person if the court finds your abuser was in the actual possession of or used a fire-arm during the commission of your abuse; (8) request a peace officer to accompany you to your residence to ensure your safe possession of the residence, vehicle, or other items, or to ensure your safe removal of personal items from the residence;**

(9) award temporary custody of a minor child to the petitioner and may arrange for visitation with a minor child if the safety of the child and the petitioner can be protected; (10) grant you possession and use of a vehicle and other essential personal effects; (11) prohibit your abuser from consuming controlled substances; (12) require your abuser to pay support for you or a minor child in your care if there is an independent legal obligation of your abuser to support you or the child; (13) require your abuser to reimburse you for your expenses caused by domestic violence, including medical bills, or for your costs in getting a protective order; (14) order your abuser to participate in an intervention program for batterers; and (15) other relief the court determines to be necessary for your safety. The forms you need to obtain a protective order are available from the nearest court.

It is not necessary to have an attorney to obtain a protective order, but you may consult an attorney if you choose. If you would like help obtaining a protective order, you may contact the nearest domestic violence program located in Anchorage, AK at 100 W. 13<sup>th</sup> Ave. The A.W.A.I.C. program can also recommend other resources available in this community about domestic violence, treatment of injuries, and places of safety and shelter.

**Call A.W.A.I.C. at 279-9581**  
**24 Hour Crisis Line 272-0100**

You may also qualify for compensation from the Violent Crimes Compensation Board (VCCB). The VCCB may be contacted at 1-800-764-3040

If th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does not understand English, the police officer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inform the victim of the services and rights specified in this section in a language the victim understands.

## **VIOLENT CRIMES COMPENSATION BOARD (VCCB)**

### **FINANCIAL ASSISTANCE 1-800-764-3040**

PO Box 111200, Juneau, AK/99811. An agency of the State of Alaska may be able to help with unexpected costs that are a direct result of the assault. The VCCB can help eligible victims with medical, counseling costs, lost wages and other losses. To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there are certain things you must do. **For example:** Report the assault or crime to law enforcement within five days, or as soon as it would be reasonable; and, file an application form with the VCCB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assault. The VCCB will make the final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pay for expenses/costs based on eligibility requirements under State law. You can get a VCCB Application form at the Anchorage Police Department, State Troopers Office, District Attorney's Office, local hospitals, STAR and Victims For Justice. Also, available on line at: [www.state.ak.us/admin/vccb](http://www.state.ak.us/admin/vccb)

## **PROTECTIVE ORDERS**

Protective orders are available for **stalking,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they can prohibit a person from threatening or committing certain actions.

**If you do not understand English** protective order information is available in Spanish, Samoan, Hmong Korean and Tagalog by calling the **ADVPPII** Language Line at the following numbers:

<b>SPANISH</b>	<b>343-7181</b>
<b>SAMOAN</b>	<b>343-7182</b>
<b>HMONG</b>	<b>343-7183</b>
<b>TAGALOG</b>	<b>343-7184</b>
<b>KOREAN</b>	<b>343-7185</b>

When requesting a protective order describe what is occurring. A magistrate or judge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ssue a protective order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 **PROTECTIVE ORDERS CONT.**

There is no charge to file a petition for a protective order. Requests may be submitted to the court to keep home or telephone information confidential. Protective orders are available on the Alaska Court web site: <http://state.ak.us/courts> or at the Boney Court House at 303 K. Street. Domestic Violence Office, M-F, 8:00 am – 9:00 pm, Weekends noon - 9:00 pm, call 264-0616. After hours call APD Dispatch 786-8900 and ask an officer to file an emergency 72-hour protective order.

### **PROTECTIVE ORDER QUESTIONS**

For questions on current protective orders, call the **ALASKA COURT SYSTEM** at **264-0616**. If you call after normal business hours (see below), leave a message.

**ALASKA COURT SYSTEM DOMESTIC VIOLENCE OFFICE  
303 K St/99501 (M - F 8 am - 9 pm, Sat and Sun noon - 8 pm) Other times contact APD at 786-8900 for emergency, 72-hour order.**

### **FEDERAL DOMESTIC VIOLENCE PROTECTIVE ORDER LAWS**

Just arriving in Alaska? Federal law allows for the enforcement of a valid protective order in any state you live or travel in. The local court can enforce the order as if it were issued locally. It is called the Full Faith and Credit to Orders of Protection (18 U.S.C. & sect; 2265). The law applies to **permanent** (6 month or 1 year), **temporary** (72-hour) and **ex-parte** (20 day) protection orders. The order must have been legally served upon the abuser/stalker. The law does not apply to mutual protection orders. The abuser/stalker must not have filed a cross-petition or if the cross-petition was filed the court must have determined that both parties were not entitled to the order.

**FEDERAL DOMESTIC VIOLENCE  
PROTECTIVE ORDER LAWS  
CONT.**

It is also illegal for a person with a valid protective order against him or her to travel into and out of another State or Indian country with the intent to violate a protection order. The law requires the *intent to violate* the protection order *at the time of interstate travel and a violation must have occurred.* (Interstate Travel to Violate an Order of Protection, 18 U.S.C. & sect; 2262(a) (1)).

For Alaska to enforce the order, you will need to provide two certified copies of the protective order to the Alaska Domestic Violence Office at 303 K Street. This is called a 'domestic violence foreign filing' or 'stalking foreign filing' and gives Alaska jurisdiction to serve the order if your abuser/stalker violates the order locally. There is no filing fee. Ask the Domestic Violence Office for a copy of the Alaska version of the protective order. The clerk will send a copy of the filed order to Alaska law enforcement. It will be entered into their system. The court or the police will **not** give the abuser/stalker a copy of the protective order or notice that you have filed the order with the Alaska court. **Keep a copy of the order with you at all time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ALASKA COURT DOMESTIC VIOLENCE OFFICE**

**264-0616**

**FAMILY LAW SELF-HELP CENTER**

**264-0851**

**TOLL FREE IN STATE ONLY**

**1-800-279-0851**

**ANCHORAGE POLICE DEPARTMENT**

**786-8900**

## **IMMIGRANT ISSUES AND DOMESTIC VIOLENCE**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ill not be contacted if you seek police protection, medical care, or social service assistance in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Your immigration status is irrelevant to your safety and protection.*

If you are leaving an abusive situation and wish to seek residency,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creates two ways for women who are married to U.S. citizens or lawful permanent residents to get their residency. 1) **Self-petitioning.** You can apply for residency with Immigration Naturalization Services (INS) for yourself and your children. Your husband does not have to know. 2) **Cancellation of removal.** The court *may* waive deportation and grant residency. You must be in deportation proceedings before applying, see an immigration attorney before starting this process. Consult a shelter worker, immigration attorney, or a domestic violence or immigration agency for assistance, before going to INS.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Website 2008.*

For local information call:

**REFUGEE ASSISTANCE & IMMIGRATION SERVICES**

**CATHOLIC SOCIAL SERVICES** **276-5590**

**ALASKA IMMIGRATION JUSTICE PROJECT (AIJP)**

**270-2457**

431 W 7<sup>th</sup> Ave., Ste. 208. AIJP is a non-profit agency that provides low-cost immigration legal services to immigrants in all immigration applications, including citizenship applications, permanent resident status, work permits, family petitions, and petition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FOR MORE INFORMATION ON DOMESTIC VIOLENCE AND IMMIGRATION ISSUES GO TO: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WEBSITE**

<http://www.endabuse.org/programs>

**ADVPP II**

**ANCHORAG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PROJECT II ASSISTS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HOLDS OFFENDERS ACCOUNTABLE IN PARTNERSHIP WITH LOCAL LAW ENFORCEMENT AND VICTIM SERVICE PROVIDERS. ADVPP II IS A PARTNERSHIP BETWEEN THE ANCHORAGE POLICE DEPARTMENT, A.W.A.I.C. THE MUNICIPAL DEPARTMENT OF LAW AND THE MUNICIPAL SAFETY LINKS PROGRAM .**

**IF YOU ARE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AND NEED INFORMATION OR FINANCIAL  
ASSISTANCE  
CALL 743-5708**

**ABUSED WOMEN'S AID IN CRISIS (AWAIC)  
BUSINESS LINE 279-9581  
24 HOUR CRISIS LINE 272-0100  
100 W. 13<sup>TH</sup> AVE. SAFE SHELTER FOR WOMEN  
AND CHILDREN IMPACTED BY DOMESTIC  
VIOLENCE. OFFERS FOOD AND CLOTHING,  
FINANCIAL ASSISTANCE, COUNSELING,  
ADVOCACY AND COMMUNITY EDUCATION.**

**IF YOU ARE IN IMMEDIATE DANGER  
CALL 911!  
OR  
THE ANCHORAGE POLICE DEPARTMENT  
786-8500**

**TRANSLATIONS MADE POSSIBLE BY FUNDING FROM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VIOLENCE AGAINST WOMEN  
GRANT # 2005-WF-AX-0103**

**KOREAN TRANSLATION  
AND  
REVIEW  
COMPLETED UNDER CONTRACT BY  
MARY KIM (T) & MIOK WOLBERS (R)**

**SEPTEMBER 2009  
KOREAN EDITION**

**© COPYRIGHT PENDING  
NO PART OF THIS BOOKLET HAY BE COPI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MUNICIPALITY OF ANCHORAG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AFETY LINKS PROGRAM  
PO Box 196650  
ANCHORAGE, ALASKA 99519-6650  
(907) 343-6589 OR (907) 343-4876**

---

CASE NUMBER: \_\_\_\_\_

OFFICER'S NAME \_\_\_\_\_

NEXT COURT APPEARANCE: \_\_\_\_\_ / \_\_\_\_\_ / \_\_\_\_\_

TIME: \_\_\_\_\_ NESBETT / ANCHORAGE JAIL

**ANCHORAGE POLICE DEPARTMENT 786-8500  
ALASKA STATE TROOPERS 352-5401  
DV PETITION FORMS 264-0615  
APD DV INVESTIGATIVE OFFICER 343-4199**

## **NOTES**

## ADVPP II

제 2앵커리지 가정 폭행/폭력 방지 계획은 지방 경찰과 피해자지원기관 등과 합작으로 가정 폭행/폭력의 피해자를 도우며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지게합니다. ADVPP II는 앵커리지 경찰, A.W.A.I.C, 시법원, 시안 전연결계획부 등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가정 폭행/폭력의 피해자이며 안내가 필요하거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743-5708**

여성 피해자 긴급 상황 도움기관  
(A.W.A.I.C.)

업무실 전화: **279-9581**

24시간 긴급 번호 **272-0100**

위치: **100 W.13<sup>th</sup> Ave.**

가정 폭행/폭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여성과 그의 자녀를 위한 안전한 보호소. 의류와 양식, 재정 도움, 상담, 변호지원과 사회의 교육등을 지원 합니다.

만일에 긴급한 위기에 처해 있으면  
911로 전화 하세요 또는  
앵커리지 경찰소 **786-8500**

번역은 다음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가능  
하였습니다 .

미 합중국 법무부  
여성 폭행/폭력 위법부  
보조금 #2005-WF-AX-103

한국어로 번역과  
재 검토는

다음 사람과의 계약 아래 거행 되었습니다

**MARY KIM (T)**  
**MIOK WOLBERS (R)**

**2009년 9 월**

한국어 판

판권 - 기다리는 중

이 책자는 다음 기관에 서면 허가 없이는  
어느부분도 사본을 떠서는 안됨

앵커리지 시 사무국

위생과 보건 부

안전연결과

**PO Box 196650**

**ANCHORAGE, ALASKA 99516-6650**

**(907) 343-6589 또는 (907) 343-4876**

---

사건 번호: \_\_\_\_\_

경찰 성명: \_\_\_\_\_

다음 법정 철두일: \_\_\_\_\_ / \_\_\_\_\_ / \_\_\_\_\_

시간: \_\_\_\_\_ NESBETT / ANCHORAGE JAIL

앵커리지 경찰소 **786-8500**

알래스카 주 경찰 **352-5401**

DV 탄원서 양식 **264-0615**

앵커리지 DV 조사 경찰관 **343-4199**